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 진성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98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br>(안 별표 제219호) ..... | 2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진성준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10. 2.

다. 회 부 일 : 2024. 10. 4.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보유한 항공기, 공항시설 등 항공산업의 유산을 보존·연구·전시하여 항공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별표 제219호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II. 검토의견

### 1.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국유재산특례 근거 신설 (안 별표 제219호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사용허가등 및 양여 근거 신설 |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sup>1)</sup>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상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6조<sup>2)</sup>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요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여부, ②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 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에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③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신설 국유재산특례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은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5%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음. 또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목적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하 생략)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① 일반재산의 대부의 제한, 대부료, 대부료의 감면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1. 조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이하 생략)

개정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_2204497호)에 따라 국립항공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박물관에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기간 역시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참고로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함<sup>3)</sup>.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5조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특례인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장기사용허가 및 양여의 국유재산특례를 통해 국립항공박물관의 항공유산의 확보, 연구 및 전시를 용이하게 하고 항공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국유재산특례 신설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둘째, 「국립항공박물관법」은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출연을 규정<sup>4)</sup>

---

3) 「국립항공박물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항공박물관을 설립하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4) 「국립항공박물관법」 제11조(재원)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3조에 따른 차입금
3.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하고 있으나, 사용료 감면 등 특례를 규정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출연금이 국유재산 사용료로 지급되는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유재산특례 신설이 다른 지원 방법보다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임.

셋째,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_2204497)은 국유재산 특례의 대상을 국립항공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국립항공박물관법」은 국립항공박물관의 수행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sup>5)</sup>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례 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갖춘 것으로 보임.

넷째, 개정안은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특례의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개정 시 존속기한 설정 원칙<sup>6)</sup>을 감안하여 존속기한의 적절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sup>7)</sup>.

---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5) 「국립항공박물관법」 제5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2. 박물관자료(항공문화 및 항공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3. 박물관자료의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5. 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부설기관의 운영·관리
7. 박물관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8. 박물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10. 그 밖에 항공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사용료 감면: 5년 / 양여·장기사용 허가: 8년

7)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특례신설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임. 구체적으로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하는 국립항공박물관에 특례를 제공하려는 점에서 공익성이 인정되며, 특례 적용 대상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고, 현재 국유재산 사용료를 예산으로 다시 보전하는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른 지원 수단에 비해 국유재산특례 신설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임. 다만, 특례 존속기한 설정 원칙에 따라 해당 특례의 존속기한은 8년이 적정하다는 입장임.

아울러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인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_2204497)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4497호)

제11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양여 및 사용허가·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박물관에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
|--------|-----|-------------------|---------------------------------|---------------|
| 별표     | 별표  |                   |                                 |               |
| < 신설 > | 연번  |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      | 특례유형                            | 존속기한          |
|        | 219 | 「국립항공박물관법」 제11조의2 | 사용료등의 감면<br>및 장기 사용허가<br>등 및 양여 | 2034. 12. 31. |

문의처

02)6788-5150

## 참고 1

## 국립항공박물관 일반현황

### □ 설립목적

-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국립항공박물관법」 제1조)

### □ 기관연혁

- 2017. 9. 14. 박물관 시설 착공
- 2019. 8. 20. 「국립항공박물관법」 제정
- 2020. 7. 5. 박물관 개관
- 2021. 1. 29. 박물관 기타공공기관 지정
- 2022. 1. 14. 1종 종합박물관 등록

### □ 조직 및 인원

- (조직) 2본부 4실 10팀
- (인원) 현원 79명, 정원 83명
- \* 임원포함

#### <조직도>

| 국립항공박물관 |         |        |                         | 비상임감사 |
|---------|---------|--------|-------------------------|-------|
| 전략경영본부  |         | 학예연구본부 |                         | —     |
| 기획조정실   | 융합사업실   | 전시교육실  | 자료학술실                   | —     |
| 총무인사팀   | 시설안전팀   | 전시운영팀  | 자료관리팀                   | 감사팀   |
| 기획평가팀   | 디지털미디어팀 | 교육운영팀  | 학술연구팀                   |       |
|         |         |        | 2023서울국제과학기술<br>박물관대회TF |       |

## □ 최근 3년 예산(수입 및 지출 구분)

(단위: 백만원)

| 2021 예산 |        |     |        | 2022 예산 |        |     |        | 2023 예산 |        |     |        |
|---------|--------|-----|--------|---------|--------|-----|--------|---------|--------|-----|--------|
| 수입      |        | 지출  |        | 수입      |        | 지출  |        | 수입      |        | 지출  |        |
| 계       | 13,607 | 계   | 13,607 | 계       | 17,326 | 계   | 17,326 | 계       | 17,109 | 계   | 17,109 |
| 정부출연금   | 13,006 | 인건비 | 5,510  | 정부출연금   | 16,362 | 인건비 | 5,634  | 정부출연금   | 16,145 | 인건비 | 5,713  |
| 사업수입    | 499    | 경상비 | 4,122  | 사업수입    | 628    | 경상비 | 4,196  | 사업수입    | 521    | 경상비 | 4,196  |
| 기타수입    | 2      | 사업비 | 3,975  | 기타수입    | 3      | 사업비 | 7,332  | 기타수입    | 6      | 사업비 | 7,034  |
| 전기양여금   | 100    |     |        | 전기양여금   | 333    | 예비비 | 164    | 전기양여금   | 437    | 예비비 | 166    |

## □ 주요시설 및 사업

- 부지 15,000㎡, 연면적 18,632㎡ (지하 1층, 지상 4층)
- (전시) 1층 항공역사, 2층 항공산업, 3층 항공생활로 이어지는 상설전시 및 항공사적 의미가 있는 기간별 특별기획전 실시
- (체험) 조종관제연계체험, 항공레포츠체험, 기내안전훈련, 블랙이글스 탑승VR, 어린이 공항체험 등 항공특화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 (교육) 항공배움놀이터, 푸릉푸릉 항공 걸음마 시설 운영 및 미래항공교육, 장애인 특화 교육 등 실시
- (기타) 항공 특화 도서관, 야외전시장, 야외쉼터, 김포공항 옥상 전망대 등 대국민 문화시설로서의 기반 구축 및 운영
- (자료 및 학술) 수장고 운영을 통한 항공사적 유물 보존, 항공역사 연구 및 결과물 발간·정기 학술대회를 통한 항공문화 진흥 실시